

라벨 표기 - 일반 요건

뉴사우스웨일즈 식품청은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규정(이하 '규정')의 라벨 표기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관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청은 뉴사우스웨일즈 **식품법(Food Act 2003)**도 집행하며, 식품법에는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라벨 표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청이 관장하지 않습니다.

- 총 중량과 규격의 기재 여부 및 정확성, 이는 국립측정연구원 (National Measurement Institute)의 소관 사항(재료 함량 비율 표기는 식품청이 관장)
- 바코드
- 재활용 코드
- 애완동물 동물 사료의 성분 및 라벨
- 식품의약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에서 등록하여 관리하는 치료용 제품(식이 보조제 및 영양 보충제 포함)
- 원산지 표기

식품 라벨 표기

식품 라벨 표기는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식품의 성분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라벨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포장 외부면에서 잘 보일 것
-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명확할 것
-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을 것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대부분의 라벨 표기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특정 정보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라벨 표기 면제 대상조항 참조). 특정 포장된 식품의 경우에도 라벨 표기 요건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벨 표기 면제 대상조항 참조).

식품법에 따라 광고 정보는 라벨 표기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식품 라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

식품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규정에서 정한 **식품명** 또는 식품의 실질적 성질을 나타내는 이름/설명
- 동일한 조건으로 특정 기간에 제조된 식품의 **생산 '로트'** (경우에 따라 날짜 코딩이 로트 번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식품 공급업체(예: 제조업체, 판매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상호와 주소**
- **성분 목록**
- **제품 유통 기한** - '소비 기한' 또는 '유효 기한' 날짜 중에 명시(자세한 사항은 **라벨 표기 - 날짜 표기, 보관 조건 및 사용법** 안내서 참조)
- **사용 및 보관 지침** -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나 유통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영양성분표(NIP)** - 해당 식품의 일회분 및 100g 당 포함된 기본 영양 성분의 양을 표기. 특정 포장 식품(예: 알코올 음료, 생수, 허브,

향신료, 시판 샌드위치)은 NIP 표기 요건이 면제됨

- 제품 및 재료의 **원산지**(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문의)
- **경고 및 권고 사항**과 알레르기나 식품 과민증이 있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 안내(관련 안내서 **식품 알레르기 및 불내성** 참조).

소분 포장 식품

소매업체들은 치즈 휠, 가공육 식품, 견과류와 콩류 등을 대용량 포장 상태로 구입한 후 업소에서 소량으로 나눠 재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매업체는 이런 식품들을 셀프 서비스 매대에 진열합니다. 소분 포장 식품에도 (상기 내용에 따라) 라벨 표기 요건이 적용되지만, 소매업체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소분 포장 식품마다 라벨 부착
- 소분 포장 식품 근처에 표지판/안내문 또는 찢어서 가져가는 안내쪽지를 비치해 라벨 표기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가 어떤 소분 포장 식품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변경될 수 있거나 소비자 안전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예: 유통 기한, 로트 코드, 보관 조건, 알레르기 유발 성분)는 라벨 형태로 표기하여 해당 소분 포장 식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라벨 표기 면제 대상

소매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일부 식품은 일반적인 라벨 표기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식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됩니다.

- 비포장 식품
- 외부 포장 없이 판매되는 용도가 아닌 '내부' 포장 상태의 식품
- 다음과 같은 용도로 업소에서 제조하고 포장하여 판매되는 식품:
 - 업소에서 '제조'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식품. 이러한 식품은 업소에서 포장하기 전에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단순히 대용량 제품을 날개의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하는 것은 라벨 표기 면제 대상 식품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구매자 앞에서 포장되는 식품:
- 고객이 식품 포장 과정을 직접 보면서 판매자에게 해당 식품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매업체에서 이를 라벨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서비스 편의상 포장하여 매대에 진열하는 식품

- 식품의 성질과 품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포장에 전체 또는 일부를 잘라서 담은 야채 및 과일(새싹용 씨앗은 이러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배달되어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포장된 식품
- 기금 마련 행사에서 판매되는 식품(관련 안내서 *자선 단체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식품 안전 요건* 참조)

비록 면제 대상 식품이라 할지라도, 안전상의 이유와 그리고 유전자 변형이나 방사선 처리 식품 규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경고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로얄 젤리, 유전자 변형 및 방사선 처리 식품을 제외하고, 식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거나(로얄 젤리의 경우 의무 요건) 또는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요건들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이 정보는 일반적인 요약이며 모든 상황을 망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업체는 식품 표준 규정 및 **2003년 식품법(NSW)**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식품청 웹사이트 참조: www.foodauthority.nsw.gov.au
- 이메일 상담 서비스: food.contact@dpi.nsw.gov.au
- 전화 상담 서비스: 1300 552 406

- 식품 표준 규정 제 1.2 부의 라벨 표기 정보 참조: www.fsanz.com.au
- 식품의약청 웹사이트 참조: www.tga.gov.au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웹사이트 참조: www.accc.gov.au

NSW 식품청 소개: NSW 식품청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식품의 안전과 정확한 표기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소비자와 업계 및 기타 정부기관들과 협력하여 식품의 안전한 생산과 보관, 이동, 판촉, 준비 등을 규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참고: 이 정보는 일반적인 요약이며 모든 상황을 망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업체는 식품 표준 규정 및 **2003년 식품법(NSW)**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